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14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3일
발 의 자: 윤영희 의원(1명)
찬 성 자: 곽향기, 김태수, 박성연,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이은림, 이종배, 최진혁,
황철규 의원(10명)

1. 제안이유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은 1만 8,396명이고, 마약범죄 압수율 적용 시 실제 투약자가 약 53만명으로 추정되는 등 마약중독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나, 마약치료비 예산 부담으로 마약치료보호 기관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마약류 중독자를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장의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 등) ① (생 략)</p> <p><u><신 설></u></p> <p>② (생 략)</p>	<p>제5조(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문서번호

2023101300000026

비대상사유서

요청인 : 윤영희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손제승 주무관

접수일 : 2023.10.13.

회신일 : 2023.10.17.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시장의 책무)제3항을 신설한 개정안으로 관련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 확인결과 기추진 사업(붙임 참조)이므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붙임] 2023년 서울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 사업목적

-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을 위한 전액무료 치료 지원을 통하여 마약류중독자의 내실 있는 사회복귀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몰수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12.(연례반복)
- 지원대상 : 검사가 마약류 투약사범 중 치료보호 의뢰한 자, 중독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치료하고자 진료를 신청한 자
- 사업내용 :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전액 지원**
 - 치료보호기관 : 서울은평병원, 인천참사랑병원 등 지정의료기관
 - (자의 또는 검찰)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신청 → (치료보호기관)중독여부 판별검사 실시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대상자 심의 → (서울시)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 의뢰 → (치료보호기관) 치료비청구 → (서울시) 치료비전액 지급
- 소요예산 : 100,000천원(국비 50,000천원, 시비 50,000천원)

□ 향후 기대효과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원치료 및 외래치료로 건강한 사회복귀 기회 부여

□ 산출근거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3년 예산내역
의료및구료비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 100,000 100,000,000원

자료 : 2023년 서울시 시민건강국 사업설명서